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
기념사업 지원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24호로 2019년 6월 5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기념사업 등의 경비의 보조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#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
2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
3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
5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·법인·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